****

|  |  |  |
| --- | --- | --- |
| **C:\Users\82106\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Word\Untitled-1-02.png** | **x** | **텍스트, 클립아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 해설서**

|  |
| --- |
| * **안내사항** ・ 본 계약 해설서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있습니다.・ 본 계약 해설서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법률문서 양식만을 사용하실 때는 저작자 및 출처 표기가 필요 없으나 본 계약 해설서를 사용하실 때는 본 해설서에 대한 저작자와 출처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수정, 보완, 삭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수정, 보완, 삭제, 변경된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배포하실 때에는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은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이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분쟁 및 손해 등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ZUZU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점에 동의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실 법률문서 양식은 변호사 등 권한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계약 해설서 제공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주주관리 서비스 ZUZU**

****

****

이 해설서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작성한 **샘플계약서**를 기초로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벤처스타트업M&A팀 파트너 변호사들이 일부 문구와 조문을 보완하고 해설을 부가한 것입니다. 본 해설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표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사용할 법률문서 양식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 사안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투자자”), **주식회사 ◎◎◎**(이하 “회사”) 및 **회사의 주주 전원**(이하 “이해관계인”)은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해설]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이하 “SAFE”라고 약칭함)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피투자기업인 회사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2) 회사의 주주 전원이 이 계약에 동의를 하여야 하며, (3) 계약 내용으로 투자금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에 연동하여 최초 투자금에 대한 지분이 확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4) 회사가 지분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SAFE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 즉 투자자에게 문서로 고지해야 합니다. 주주 전원으로부터 SAFE 계약서를 첨부하여 별도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회사만 계약 당사자가 되어도 됩니다. 다만 초기 스타트업에 주로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주주의 숫자가 많지 않다면 주주 전원을 이해관계인으로 SAFE 계약 당사자로 하여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치한도 및 할인율의 표시]**

|  |  |  |
| --- | --- | --- |
| **가치한도** |  금 원정(\ ) | 가치한도 할인율가치한도+할인율 |
| **할 인 율** |  ( )% |

[해설]SAFE계약은 초기 스타트업 지분 투자할 때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되는 계약입니다. 후속 투자 유치시 기업 가치 평가에 따라 SAFE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지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SAFE 계약 체결 시 후속 투자에서 산정되는 기업가치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지분율을 결정하거나 후속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평가 상한(Valuation Cap, 이하 “가치한도”)을 정해 놓거나, 또는 2가지를 결합하여 정합니다. 2가지를 병행한 경우에는 본 계약 제1조 제5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투자자에게 값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므로 통상 2가지 방법 중 지분율이 높은 값으로 결정됩니다.

 **[제3조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택 1)**

|  |  |
| --- | --- |
|   보통주 |   우선주 |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지분”이란 “후속투자”, “경영권 변경” 및 “상장”의 각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기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 전환 또는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전체 지분증권 수량을 말한다. 다만,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전환 또는 행사 간주에서 제외한다.
2. “후속투자”란 회사의 자본금 충당을 위하여 하나 혹은 연결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회사가 1주당 발행가 금 원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본 항의 기준에 따라 본 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SAFE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 신주발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치한도 및 할인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회사와 SAFE 투자자가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경영권 변경”은 제3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의결권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회사가 구조조정 또는 인수합병되는 경우(단, 해당 거래 직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거래 이후에도 50%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 및 회사자산, 영업의 전체혹은 대부분을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3. “전환가격”이란 “후속투자”가 있는 경우 (1) “가치한도”를 “총지분”으로 나눈 값과 (2) “후속투자”에서 합의된 1주당 발행가액에 “할인율”(“할인율”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할인율”은 100%로 본다)을 곱한 값 중 투자자가 선택한 값에 해당하는 1주당 가격을 말한다.
4. “회수가격”이란 “경영권 변경” 또는 “상장”이 있는 경우 “가치한도”(가치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경영권 변경 및 상장시 산정된 회사가치)를 “총지분”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1주당 가격을 말한다.

**제2조(투자금의 지급 등)** ① 투자자는 아래와 같이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  |
| --- | --- |
| **투 자 금** | 금 원정(₩ ) |
| **입 금 일** |  |
| **입금계좌** |  (예금주: ) |

 ② 투자금은 그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만기일은 원칙적으로 지정하지 않되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 발생시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제3조에 따른 신주발행 및 금전지급 이외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해설] SAFE계약에 따른 투자금에 이자를 약정하거나 상환만기일을 지정하는 식으로 약정하면, 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정한 SAFE계약의 정의 개념의 내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SAFE계약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그러한 약정은 추후 판례에 의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조(회사 등의 의무)**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하여 신주발행 또는 금전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후속투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발행가액이 “전환가액”이고, 투자금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수량의 신주를 투자자에게 발행한다.
3. “경영권 변경” 또는 “상장”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4.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 회사는 주당 발행가액이 “회수가격”이고, 미지급액을 “회수가격”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수량의 신주를 투자자에 발행한다.
5. 회사는 주당 발행가액이 “회수가격”이고, 투자금을 “회수가격”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수량의 신주를 투자자에게 발행한다.
6.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의 납입채무를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하는데 동의한다.
7. 이해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신주발행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8. 회사가 본 조에 따른 신주발행 또는 현금지급 의무를 지체한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그 이행을 서면으로 독촉한 다음날부터 각 의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일할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벤처투자법령에 SAFE계약에 따른 신주발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어 지분인수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투자자에게 신주를 당연 발행하거나 투자금이 신주로 당연 전환될 수는 없고 회사가 상법과 정관에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주발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분인수 조건이 달성되었음에도 신주발행 절차 진행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이나 분쟁 해결 조항 등을 특약 등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투자자의 지위)** 제3조에 따른 신주발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으며 채권자의 지위에 선다.

**제5조(양도금지)** 투자자,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존속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해산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지위 및 권리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승계되며, 회사는 계약상 지위 승계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사실의 고지 등)** 회사가 제3자와 “후속투자”, “경영권 변경” 및 “상장”을 포함하여 회사의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계약(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발행계약 및 본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포함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거래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신주발행 및 금전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회사가 거래상대방인 후속 투자자에게 본 SAFE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고지할 때는 ‘문서’로 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7조(진술과 보장)**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별지: 진술과 보장”에서 기재한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제3조에 따른 신주발행 또는 금전지급이 완료되는 일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배상책임 등은 계약기간의 도과 이후에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변경은 각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효력이 없다.

**제10조(계약의 가분성)**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하 서명, 날인을 위한 여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  |  |  |
| --- | --- | --- | --- |
| 투자자 | 회 사 명 |  | (인) |
| 주 소 |  |
|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  | 대표자 서명 |  |
| 대 리 인(위임장 첨부) | 성 명 |  | (인) |
|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서명 |  |
| 회사 | 회 사 명 |  | (인) |
| 주 소 |  |
|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  | 대표자 서명 |  |
| 대 리 인(위임장 첨부) | 성 명 |  | (인) |
|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서명 |  |
| 이해관계인(주주) | 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서 명 |  | (인) |
| 주 소 |  |
| ②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서 명 |  | (인) |
| 주 소 |  |
| … | … | … | … |
| ⑨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서 명 |  | (인) |
| 주 소 |  |

(별지)

**진술 및 보장**

1. 회사는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2.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3.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며,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4.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5. 회사는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만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조사, 감사, 수사 포함), 법령 또는 보전처분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어떠한 제한이나 회사가 당사자이거나 구속을 받는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6. 회사는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될 것임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7. 회사는 투자자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제공일 현재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회사의 임직원이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단, 사업계획서 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관련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8. 회사는 현재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은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끝.